

(2) 1923년 가을의 소작료 4할제 관철투쟁

1923년 봄 군청의 중재로 마련된 순천지주회의 결의 가운데는 ‘소작료 4할제 실시’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순천군과 보성·고흥군의 지주들은 1923년 10월 25일 지주회를 개최하여, “소작료는 수확고의 5할을 표준하여 건조·조제 우량자는 지주로부터 장려조를 교부하며 4할 이내로 할 일”이라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를 선언하였다.¹⁾ 상황이 이러하자 군 농민대회연합회는, “소작료를 무리하게 남집(濫執)한 악지주에 대하여 4할 이내로 재조정하기까지 소작료 불납동맹을 철저히 실행할 일”, “지세는 지주의 부담이라고 결정만 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소작인을 기만함에 불과한 도군농회(지주회)의 결의는 배척할 일”, “전년 미반환한 소작료 중으로 공제할 일”, “두량의 불공평으로 인정한 지주에게는 본회, 또는 각 면회에서 간사원(幹事員, 추감위원)을 선정하여 입회케 할 일”²⁾ 등을 결의하고, 순회강연을 통해 각 면단위 농민대회를 격려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각 면단위 농민대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감위원(秋監委員)의 입회문제와 관련된 결의이다. 추감위원은 간평(看坪)이나 두량을 할 때 입회하여 공정한 소작료 사정 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운동이 활발했던 면의 경우 각 마을의 해사인(解事人), 풍력인(風力人)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운동이 부진한 지역은 면이나 연합회에서 파견된 지도자들이 직접 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면농민대회는 10월 11일 추수투쟁의 구체적인 방침으로, 소작료 두량은 절대로 지주집에서 하지 말고 소작인이 거주하는 동리에서 교섭위원(추감위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할 것을 결의하였다.³⁾

이처럼 농민대회를 매개로 각 면의 소작쟁의가 격렬하게 전개되자 앞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지주들은 농민대회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신문에는, 「지주 각성 현저」, 「4할 집도(執賭) 빈빈」, 「순천 지주의 신추세」, 「4할 지주 일증(日增)」 등 ‘소작료 4할제’가 관철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발견된다.⁴⁾ 하지만 김학모와 김병준(金炳俊), 김병옥, 박승봉(朴勝奉), 김회산, 김순평(金順桴) 등 일부의 거물 악지주들은 이때도 농민대회의 요구를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부정함으로써 분란을 일으켰다.⁵⁾ 특히 지방청년회 회장이었던 서병규가 앞시기의 지세반납투쟁 때와 달리 농민대회의 4할제 요구를 무시하고 분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순천지역의 지방정치구조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황전면농민대회는, “지방청년회장이니 도평의회원이니 하는 신사계급에 있는 지주가 이와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상식이 없는 지주들은 우리 소작인들을 어떻게 착취를 하겠느냐.”고 하면서 비난함과 동시에 농민대회의 요구를 수용한 지주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작료를 집 앞에 가져다 주는 등 공개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⁶⁾

1) 『동아일보』 1923. 10. 13.

2) 『동아일보』 1923. 12. 3.

3) 『동아일보』 1923. 10. 15 · 『조선일보』 1923. 10. 18.

4) 『동아일보』 1923. 11. 25 · 1923. 11. 28 · 1923. 12. 1 · 1923. 12. 2.

5) 『조선일보』 1923. 10. 20 · 1923. 10. 27 · 1923. 11. 7 · 1923. 12. 25 · 『동아일보』 1923. 10. 21 · 1923. 11. 12.

6) 『동아일보』 1923. 12. 12.